

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



YES

NO

교인이 출마했을 때

- 교인 동정 차원에서 출마사실만을 간단하게 공지하는 것
-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, 간증하는 것

- ✗ 교인의 학력, 경력, 사회활동 등을 전하거나 인사나 발언기회를 주는 등 어떤 식으로든 지지를 유도하는 것
- ✗ 선거운동 기간에 미리 정해진 순서와 상관 없이 갑자기 해당 교인이 기도, 간증, 무료 상담(법률상담, 세무상담 등)을 하는 것

교인이 아닌 후보가 방문했을 때

- 평소처럼 교회가 예배에 참석한 신자를 소개하는 관례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참석한 사실을 알리는 것

- ✗ 단순한 동정 소개 차원을 넘어 후보자의 출마사실을 알리거나, 지지를 유도하는 것
- ✗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인사나 발언의 기회를 주는 것

예배나 모임을 할 때

-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고,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정도의 발언 또는 기도
- 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계없는 예배나 모임

- ✗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하는 것
- ✗ 비유나 상징, 간접화법 등을 이용하여 듣는 이가 특정 후보,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한다고 쉽게 알 수 있는 모든 행위
- ✗ 교인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선동 행위
- ✗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배를 가장한 정치집회나 모임

교회 구성원이 선거와 관련된 행동을 할 때

- 정보통신망(문자메시지, 카카오톡, 유튜브, SNS 등)을 이용하여 후보자 또는 그와 관계된 '공익'에 관한 '진실한 사실'을 알리는 행위
- 교인이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헌금을 내는 행위

- ✗ 정보통신망(문자메시지, 카카오톡, 유튜브, SNS 등)을 이용하여 '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'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'허위사실 유포' 및 '비방'을 하는 행위
- ✗ 교인이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헌금을 내는 행위